

#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11월 8일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2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19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•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(2024. 11. 21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김환복 마이스산업과장)

가. 제안이유

○ 포항시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(재)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○ (재)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○ (재)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재산 및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
○ (재)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정관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○ (재)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9조)

## 3. 관련법령

○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○ 「포항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 조례」

○ 「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」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장준호)

- 본 조례안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  
- 검토결과,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라 포항시만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마이스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운영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  
- 그 외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# 5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#### 6. 토론의 요지 : 없음

####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